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134호

2025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패스트트랙 참여기업 모집공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시업」 패스트트랙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4일 중소 벤처기업부장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패스트트랙(상시모집)'과 '일반트랙(연 3회 모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부터 별도로 공고함

< '25년 패스트트랙 공고내용(요약) >

구분	주요 내용					본문 위치 (링크)		
	미국	FCC (전기전자)	FDA (의료기기 Cla	ss1)	FDA (화장품 등록) ^{신규★}			
	유럽	CE (전기전자, 통신 및 기계분야) CPNP (화장품)		CPNP (화장품)				
	국제	HALAL(식품	·, 화장품 등)		IECEE (전기전자)	2		
지원대상 인증 (8종)	일본		PSE (전기점	던자)		<u>p.2,</u> 붙임 1		
(08)	(연	간 지원한도 내(□차 신청가능 트랙으로 신청 필요	<u> </u>		
	Ж ш							
모집기간	▶ <mark>상</mark>	<u>p.3</u>						
지원내용	▶ 하	<u>p.3</u>						
지원한도	* [▶ 패스트트랙-일반트랙 합산 기업당 최대 4건*, 1억원 * 단, 최대건수를 신청했음에도 신청금액 합이 3,500만원 미만일 경우, 3,500만원 한도 내에서 4건을 초과하여 건수 제한 없이 신청 가능						
지원대상	▶ 전 * 단	<u>p.2</u>						
.1+14144	▶ 해 신	n 2						
신청방법			인 → 해외규격인증 반트랙] 구분 신경		득지원사업 → 사업신청	<u>p.3</u>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수출인증지원센터 (☎ 02-2164-0173~8)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1. 사업 개요

□ 목적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

□ 모집규모 : 연간 500개사 내외(상시모집) * 모집 규모 변동 가능

□ 지원기간 : 협약체결 후 1년(연장 필요시 12개월 단위로 1회 연장 가능)

□ **지원대상**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단,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5,000만불 이상도 지원 가능

2. 지원내용 및 한도

□ 지원내용 : 8개* 해외규격인증(【붙임 1】)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및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비용의 일부(50% ~ 70%) 지원

* 아래 인증(8종)이 아닌 해외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일반트랙"으로 신청하여야 함

	<패스트트	백 지원대상	인증(8종)>	
미국	FCC(전기전자)	FDA(의료기	기 Class1)	^{25년 신규} FDA(화장품 등록)
유럽	CE(전기전자, 통신 및 기	기계분야)		CPNP(화장품)
국제	HALAL(식품, 화장된	품 등)		ECEE(전기전자)
일본		PSE(전	기전자)	

단 위 인증에 해당하더라도 고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건당 3,000만원 이상 소요), 일반트랙고비용인증으로 신청

· 고비용인증 : 신청 시 견적서를 제출하여 관리기관에 의해 인정받은 인증·시험비용의 합이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인증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4건, 1억원 한도 내 지원(일반-패스트트랙 합산)

	기업당	지원비	인증 분야별			
지원건수	지원한도	100억원 미만	300억원 300억원 미만 이상		개별한도	
최대 4건	연간 1억 원	70%	60%	50%	붙임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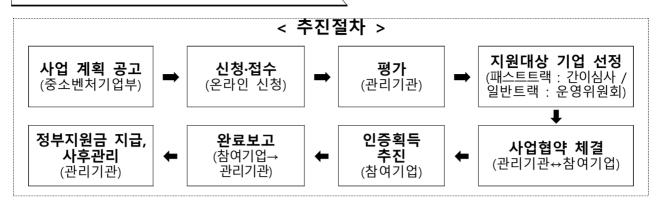
* 최대건수(4건, 일반-패스트트랙 합산)를 신청했음에도 신청금액((예상)협약금액) 합이 3,500만원 미만일 경우, 3,500만원 한도 내에서 4건을 초과하여 지원건수 제한 없이 추가 신청 가능

- 인증을 획득한 참여기업의 실제 인증획득 소요 비용에 지원비율을 적용한 금액과 "패스트트랙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기준 【붙임 2】"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원
 - (1)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붙임 2)는 기업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항목은 다음과 같음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 법정대리인 선임비 : 인증(또는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을 선임해야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컨설팅비 : 등록된 컨설팅기관의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3. 모집기간 및 방법

- □ **모집기간** : '25년 2월 24일(월) 09:00 ~ 8월 29일(금) 18:00 까지(상시모집)
 - * 예산 조기 소진 시 모집이 조기 종료 될 수 있음
 - o 대상인증 : 국가별 패스트트랙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 인증 8종 [붙임 1]
 - * 단 위 인증에 해당하더라도, 고비용(1건에 3,000만원 이상이 소요)인 경우 경우 일반트랙고비용인증으로 신청
- □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업로드
 - imes 회원가입 o 로그인 o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o 사업신청 o [패스트트랙/일반트랙 구분 신청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smes.go.kr/globalcerti/)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사업신청] → [패스트트랙] 구분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후 등록
 - 구비 서류 【붙임 3】는 신청 시 전산 업로드(오프라인 제출 X)
 - * 파일형식: PDF, JPG, PNG 등 스캔파일 및 HWP, DOC, EXCEL 등 문서파일

4. 평가·선정 및 지원 등



□ 평가 및 선정

- **평가기간** : 접수 다음달 1일 ~ 15일(단, 2월 신청 기업은 3월 접수에 포함) * 평가 및 선정일정은 관리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신청기업 평가표(붙임 4)에 따라 인증획득 필요성, 가능성, 의지, 해외시장 진출 역량 및 다변화 등 평가를 실시(서면평가)
 - 여성기업, 지방소재 기업 및 우수기업 등은 평가 시 가점부여

구분	가 점 항 목 (※각 구분요건에 해당시 구분별 1회 가점부여)	가점
1	여성 또는 지방소재 기업	1
2	소재·부품·장비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소부장 전문기업, 소부장 으뜸기업, 소부장경쟁력위원회 상생모델 지정기업	1
3	우수 중소기업 혁신제품 해외실증 지원사업 참여 기업, 해외인증 종합지원 우수기업 (산업부 해외인증지원단 추천기업 한정), 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 선정기업	2

※ 신청기업 평가관련 유의사항

- 신청마감일 기준 유효한 서류만 인정함
 - * 패스트트랙은 접수 월의 말일을 신청 마감일로 간주함. 단, 2월 신청기업은 3월 신청기업과 동일하게 적용
-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시 관리기관이 신청기업 소재지(사무실 등)에 현장 방문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협조해야함
- 신청서류 검토 및 평가 중 지원제외 대상임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기업의 신청을 반려함
- **선정방법** : 간이심사 후 평가점수가 선정 자격기준(65점) 이상인 기업을 월별 예산규모 내에서 평가점수 순으로 선정

□ 협약

- **협약** : 선정기업은 관리기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인증획득 협약을 체결하며, 협약기가 내 인증획득 성공 시 인증획득비를 지급함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연장 필요 시 12개월 단위로 최대 1회 연장 가능)

※ 지원기간 연장

- 지원기간(과제수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지원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음
- 패스트트랙 지원기간 연장은 12개월 단위로 신청가능하며, 최대 1회 신청 가능
- **정산** : 지원기간 내 인증획득완료 후 관리기관에 완료보고 시 정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성공조건부 사후지원)
 - 참여기업은 단독으로 인증획득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등록컨설팅 기관 이용시에만 컨설팅 비용을 지원함

※ 관리기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등록된 컨설팅 기관 조회방법

(https://www.smes.go.kr/globalcerti/ → 컨설팅기관 → 컨설팅기관 검색 메뉴 이용)

5. 신청 제외대상

- ※ 선정 이후에 신청제외 사유 적발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협약완료시 협약취소)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ㅇ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 * 단,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
 - * 단,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 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가능
 - ㅇ 동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 진행 중인 트랙이 종료되어도 당해 연도 동일 트랙 재참여는 불가함
 - 동 사업에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동 사업 또는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제품(파생모델 포함)의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성실실패 정부지원금 포함)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 * 단, 제품(모델),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또는 사업 공고일로부터 과제 수행기간 내에 인증만료일이 도래한 인증갱신 건은 지원 가능(과제수행기간 내 1회에 한함)
 - 직전 5개년('20년 ~ '24년 사업) 동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금액 합산액이 2억워 이상인 기업

6. 기타 유의 사항

□ 인증획득 완료 후 실제 소요 비용의 일부(50% ~ 70%)를 정부지원금 한도(협약금액) 내에서 성공조건부로 사후 지급하는 사업임

※ 주의사항

컨설턴트나 컨설팅기관으로부터 기업의 부담이 전혀 없게 하겠다는 허위제안, 소요 비용 페이백 등 부정한 제한이 있는 경우 관리기관으로 신고 바람. 허위 또는 부정한 제안에 가담하는 경우 관리기관(KTR)에서는 사업비 환수, 고발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임

- □ 사업 공고일 기준 이미 획득한 인증은 지원 불가함
 - * 패스트트랙은 매월 접수시작(1일) 당일을 해당월 공고일로 간주함(단, 2월 신청분은 사업공고일(2월 24일) 기준)
- □ 이전년도 사업이 진행 중인 기업은 사업종료 후 신청이 가능하며, 당해 연도 사업에 한하여 패스트트랙과 일반트랙은 교차신청이 가능
- □ 컨설팅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복수의 컨설팅기관에서 비교견적을 받아 가격, 컨설팅기관의 지원 실적 등을 감안하여 컨설팅 기관을 선택할 것을 권장
 - * 컨설팅기관 결정 후에는 담당 컨설턴트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증획득진행을 권장
- □ 컨설팅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인증 또는 미등록 컨설팅기관*을 활용한 인증은 컨설팅비를 제외한 인증비, 시험비만을 지원
 - * 관리기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등록된 컨설팅 기관이 아닌 컨설팅 기관
 - ※ 관리기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등록된 컨설팅 기관 조회방법
 (https://www.smes.go.kr/globalcerti/ → 컨설팅기관 → 컨설팅기관 검색 메뉴 이용)
- □ 신청금액(협약금액)은 "패스트트랙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 기준(붙임 2)"에 따라 결정
 - * 단, 지원기업 선정 시 예산상황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협약금액을 조정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은 협약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패스트트랙은 지정된 인증(분야)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패스트 트랙과 일반트랙간 인증명칭 변경은 불가함 □ 인증획득 완료 후 지원받은 제품에 대한 수출실적 성과확인을 위한 수출실적제공 및 성과증명요청에 응해야하며, 미제출시 차후 동 사업 참여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 종료 후 지원성과 확인을 위한 제출방법 및 기간은 관리기관(KTR)에서 별도 공지 □ ESG자가진단 보고서는 ESG 통합플랫폼*에 회원가입 후 ESG자가 진단을 실시하여 사업 신청 시 필수 제출되어야 함 * ESG통합플랫폼(https://kdoctor.kosmes.or.kr/esgplatform/main.do) □ 「공공재정환수법」시행(2020. 1. 1.)으로 부정청구 등*은 관련법에 따라 부당이익금(이자율 포함)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부당이익금의 최대 5배)이 부과 · 징수될 수 있으니, 타 사업과의 중복신청, 과다 청구 등에 유의하여 신청바람 * 동일한 내용의 인증획득 소요 비용을 여러 사업에 중복 청구하는 행위, 과다하게 비용을 부풀려 청구하는 행위 등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동 "사업 운영요령 및 과제수행 가이드(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요령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동 공고문 해석에 이의가 발생하는 경우, 공고기관(중소벤처기업부) 및 관리 기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해석에 따름

7. 문의처

관리기관	전화번호	FAX	주 소
(재)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수출인증사업단)	02)2164-0173~8	02)507-8118	(13810) 경기 과천시 교육원로 98, 본관동 303호(수출인증지원센터)

【붙임 1】

국가별 패스트트랙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 (8개)

국가별		규격	인증		
미국	FCC (미국통신위원회 전자파적합성인증)	FI (미국식품의약국 -의료기기		FDA (미국식품의약국허가·등록제도) -화장품 등록 ^(신규) -	
유럽(EU)	CE (유럽통합규격인증 -전기전자, 통신 및 기:		CPNP (유럽화장품등록)		
일본	PSE (일본전기용품안전인	<u>l</u> 증)			
국제	IECEE-CB test (국제전기기기인증기	데도)	(HALAL 이슬람할랄인증)	

- ※ 패스트트랙은 지정된 인증(분야)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패스트트랙과 일반트랙간 인증명칭 변경은 불가함
- ※ 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인증 이외의 모든 인증은 일반트랙으로 신청해야 함
- ※ 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인증이라하더라도, 고비용인증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트랙으로 신청해야 함
 - · 고비용인증 : 신청 시 견적서를 제출하여 관리기관에 의해 인정받은 인증·시험비용의 합이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인증

【붙임 2】

패스트트랙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 기준

(○: 인정 / 단위: 천원)

해당	지원	제품분야	WH =		인증획득비용 인정여부(인정한도)			정부지원금 한도액		
국가	규격명		세분류	인증	시험	컨설팅 인정비용	100억원 미만	300억원 미만	300약원 이상	분야 코드
		전자기기	전자파, 전기안전, 무선통신 중 1개 시험	0(1)	0	600	2,200	1,900	1,600	DoC-CEEL1
		(LVD, EMC,	전자파, 전기안전, 무선통신 중 2개 시험	0(1)	0	600	4,400	3,800	3,200	DoC-CEEL2
		RED)	(RED) 무선통신, 전자파, 전기안전 모두 시험	0(1)	0	2,200	8,200	7,100	5,900	DoC-CEEL3
	CE	기계	EC지침 기계류부속 4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0	0	1,100	3,900	3,400	2,800	DoC-CEMD1
유럽		(MD)	EC지침 기계류부속 4에 포함되는 경우	0	0	2,200	5,400	4,700	3,900	CoC-CEMD2
		EU RoHS A	시험을 신규로 진행하는 경우	_	0	-	2,100	1,800	1,500	R(추가코드)
		광생물학적	시험을 추가로 진행하는 경우	_	0	-	1,100	1,000	800	B(추가코드)
	CPNP	화장품	-	0	0	500	2,100	1,800	1,500	DoC-CPNP
			법정대리인 선임시 (기업당)	(2,600)	-	-	1,800	1,600	1,300	RP1 (추가코드)
일본	PSE	전기전자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 기용품	-	0	600	3,500	3,000	2,500	DoC-PSE1
			특정전기용품(인증서 발급)	0	0	800	5,700	4,900	4,100	CoC-PSE2
	FCC	Unintentio nal radiators	EMI(전자기파 간섭 시험) - 무선송신기능이 없는 경우	. 0	0	400	2,000	1,700	1,400	DoC-FCC1
		Intentional radiator	무선송신기능이 있는 경 우	0	0	1,600	5,600	4,800	4,000	CoC-FCC2
		의료기기	Establishment Registration (의료기기 Class1)		-	600	9,300	8,000	6,600	DoC-FDME1
미국		(감액지원)	Establishment Registration (의료기기 Class1)	0	-	300	4,650	4,000	3,300	DoC-FDME1 -D
	FDA ⁽²⁾	화장품	제품 및 시설등록 (MoCRA)	0	0	1,000	1,500	1,300	1,100	DoC-FDMOC
		법정대리인 선임시(기업당)		(1,000)	-	-	700	600	500	RP2 (추가코드)
		(감액지원)팀	법정대리인 선임시(기업당)	(1,000)	-	-	350	300	250	RP2-D (추가코드)
구궤	IECEE- CB test	전기전자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	0	0	1,400	7,000	6,000	5,000	CoC-CB
국제:	HALAL	식품/ 화장품	식품, 화장품 등 심사대상 시설 단위당	0	0	8,000	11,200	9,600	8,000	CoC-HAL

- (1) 인증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저전압전기안전지침(LVD)의 인증서 발행은 인증비용 인정 불가
- (2) 패스트트랙에서는 FDA 의료기기 Class1 시설 및 제품등록 비용만 지원이 가능하며, '21년 이후 시설 및 제품등록비(Establishment Registration) 지원이력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지원은 불가함(단, 신규제품 추가 등록인 경우에 한하여 감액지원)
 - * 의료기기 Class2(510K) 이상 제품은 일반트랙으로 신청하여야 함
- (3) HALAL인증은 심사대상 시설 단위 및 국가별 인증기관에 따라 건수를 추가하는 인증임

- ※ 추가코드는 인증획득 시 필수로 요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분야코드에 정부지원금 한도액을 합산하여 지원하는 분야임
- ※ 컨설팅인정비용은 지원금액이 아닌 인정가능한 컨설팅비용 한도이며, 인증·시험·컨설팅 비용을 합산하여 인정된 금액에서 50% ~ 70% 비율로 지원됨
- ※ 동일한 시험규격, 내용으로 중복 발행된 시험성적서(보고서 등 포함) 비용은 제외될 수 있음

【붙임 3】

2025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패스트트랙 신청기업 구비 서류

□ 필수 제출서류 : 신청기업 모두 전산 업로드

- 사업신청서 1부 (온라인 작성) 및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온라인 작성)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온라인 작성)
- 전전년도 및 전년도(당해 연도 포함) 직접수출액 확인서 (Tmydata 플랫폼을 통한 자동 확인, 제출생략)
- 전전년도 및 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 (원클릭시스템을 통한 자동 확인, 제출생략)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클릭시스템을 통한 자동 확인, 제출생략)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한 사전발급, 제출생략)
- ESG자가진단 보고서 1부(ESG통합플랫폼에서 작성 후 전산업로드 (https://kdoctor.kosmes.or.kr/esgplatform/main.do)

□ 선택 제출서류 : 해당되는 경우만 전산 업로드

구분	평가항목	제출서류 (해당기업에 한함)		
	시험·인증기관 접수증/견적서	○ 시험·인증기관 접수증 또는 견적서 등 * 인증 요청 대상 제품에 한함		
인증획득 필요성, 가능성, 의지	해외규격인증 획득노력	○ 제출생략		
	매출액 증감률	○ 제출생략(튼튼한내수기업 포함)		
	수출증가율	○ 관세청(무역통계진흥원) 직접수출액(확정) 조회 기준 - [패스트트랙] 제출생략		
해외시장 진출 역량 및 다변화	수출실적 증가			
진출 역량 및 다변화	수출국증가, 신시장진출			
	글로벌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	○ 제출생략		
가점	가점사항	○ 제출생략		

[붙임 4] 2025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패스트트랙 신청기업 평가표

평가 항목	평가구분	배점	평가방법	점 수
인증획득 필요성 기능성, 의지 (50점)	시험· 인증기관 접수증/ 견적서	30점	• 인증획득 예정 신청건별 견적서(또는 접수증) * 시험기관 또는 인증기관의 견적서만 인정됨 - 모두 제출 (30점) - 50% 이상 제출 (25점), 50% 미만 제출 (20점) - 미제출 (10점)	
	해외규격 인증 획득 노력	20점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주관 온·오프라인 교육 이수 이력 (전년도 및 당해 연도) 심화교육 1회 또는 일반교육 3회(10점), 일반교육 2회(7점), 일반교육 1회(4점), 이수이력 없음(2점)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전담대응반 전문심층상담* 참여이력 (전년도 및 당해 연도) 오프라인 상담회 참여(10점), 온라인 상담 참여(7점), 참여이력 없음(4점) * 전담대응반 전문심층상담 온라인 상담 / 오프라인 상담회 참여 	
	매출액 증감률	10점	• 매출액 증감 실적(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 30% 이상(10점), 10% 이상(8점), 0% 이상(6점), 감소(4점) * 초기창업기업(창업 3년 이내)의 경우 국세청 홈텍스에서 매출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감소한 경우 6점부여	⊣ 1
해외시장	수출 증감률	10점	*내수기업(수출바우처사업) 선정 기업은 매출액 증감률 점수 10점 만점 부여 • 수출 증감률(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진출 역량 및 다변화 (50점)	수출실적 증감	10점	수출액 증감 실적(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 60만불 이상(10점), 10만불 이상(8점), 0불 이상(6점), 감소(4점) * 전년도 직접수출액 0불의 경우 6점부여	-
(50점) (직접수출 한정)	수출국 증가	10점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당해 연도 포함) 수출국가수 증가 실적 3개국 이상(10점), 2개국 이상(8점), 1개국 이상(6점), 증가 없음(4점) * 전년도 직접수출액 0불의 경우 6점부여 	
	신시장 진출	10점	• 신규 수출국 진출 여부(전전년도전년도 수출실적 없는 국가 대상 인증 신청 여부) - 2개국 이상(10점), 1개국(8점), 신규수출국 없음(6점) * EU인증(CE, CPNP) 신청시 가점 2점부여 (다만, EU 내 수출실적이 있을 경우, 신규 수출국은 0개국으로 계산) ** 국제인증(IECEE, HALAL) 신청시 가점 2점부여(내수기업에 한함)	
	넘을 수 (소기업 · 부여. 었음	1000+ 지정기업의 경우 '해외시장 진출 역량 및 다변화' 평가점수 단, 추가점수를 포함한 '해외시장 진출 역량 및 다변화' 점수는 50점을	
총	계	100점		
가점(4점)		4점	구분가점 항 목 (※각 구분요건에 해당시 구분별 1회 가점부여)가점1여성 또는 지방소재 기업1소재·부품·장비기업 2: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소부장 전문기업, 소부장 으뜸기업 , 소부장경쟁력위원회 상생모델 지정기업1	
			우수 중소기업 : 혁신제품 해외실증 지원사업 참여 기업, 해외인증 종합지원 우수기업 2 (산업부 해외인증지원단 추천기업 한정), 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 선정기업 * 본점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기업	